영 등 포 구 의 회 2006년 제2차 정례회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討報告書

2006. 12. 1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 완 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2	구 분 배별 국 별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구성비(%)
	총계	272,835,730	240,940,093	31,895,637	13.2	
일	소 계	229,000,000	199,000,000	30,000,000	15.1	100.0
	구 의 회	3,146,418	2,728,322	418,096	15.3	1.4
	혁신기획담당관	232,020	97,280	134,740	138.5	0.1
	감사담당관	306,389	283,852	22,537	7.9	0.2
반	행 정 국	86,125,613	83,459,609	2,666,004	3.2	37.6
회	재정경제국	2,378,309	2,061,510	316,799	15.4	1.0
계 	보 건 소	11,197,025	9,433,356	1,763,669	18.7	4.9
	주민생활지원국	74,849,264	55,851,093	18,998,171	34.0	32.7
	도시관리국	31,883,154	31,080,555	802,599	2.6	13.9
	건설교통국	18,881,808	14,004,423	4,877,385	34.78	8.2
특 별 회 계	소 계	43,835,730	41,940,093	1,895,637	4.5	100.0
	사회복지과(의료급여)	255,901	151,213	104,688	69.2	0.6
	가정복지과(주민소득)	1,746,699	1,660,462	86,237	5.2	4.0
	교통지도과(주차장)	41,833,130	40, 128, 418	1,704,712	4.2	95.4

# 2. 세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 감	
		세 입	구성비 (%)	세 입	구성비 (%)	증 감 액	대 비 (%)
총 규 모		229,000	100.0	199,000	100.0	30,000	15.1
구 세		83,731	36.6	70,877	35.6	12,854	18.1
	면 허 세	1,117	0.5	1,321	0.7	△204	△15.4
	재 산 세	57, 194	25.0	46,037	23.1	11,157	24.2
	사 업 소 세	24,460	10.7	22,549	11.3	1,911	8.5
	지난년도구세	960	0.4	970	0.5	△10	△1.0
세 외 수 입		70,579	30.8	70,806	35.6	△227	△0.3
5	령상적세외수 <b>입</b>	30,684	13.4	28,843	14.5	1,841	6.4
	재산임대수입	331	0.1	227	0.1	104	45.8
	사용료 수입	7,376	3.2	7,565	3.8	△189	△2.5
	수수료 수입	4,917	2.1	4,843	2.4	74	1.5
	징수교부금	16,867	7.4	15,695	7.9	1,172	7.5
	이 자 수 입	1,193	0.5	513	0.3	680	132.6
2		39,895	17.4	41,963	21.1	△2,068	△4.9
	재산매각수입	615	0.3	890	0.4	△275	△30.9
	순세계잉여금	32,500	14.2	35,775	18.0	△3,275	△9.2
	이월금	-	_	11	_	△11	△100.0
	부담금	50	0.02	57	_	△7	△12.3
	잡수입	3,480	1.5	3,355	1.7	125	3.7
	지난년도수입	3,250	1.4	1,875	0.9	1,375	73.3
의 존 수 입		74,690	32.6	57,317	28.8	17,373	30.3
	지방교부세	2,797	1.2			2,797	100.0
	보통교부금	28,324	12.4	22, 178	11.1	6,146	27.7
	재정보전금	2,332	1.0	2,294	1.2	38	1.7
	국고보조금	19,863	8.7	14,201	7.1	5,662	39.9
	시비보조금	21,374	9.3	18,644	9.4	2,730	14.6

#### 3. 검토의견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보다 13.2% 증가된 2,728억 3,57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1% 증가된 2,2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 증가된 438억 3,57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7.4%,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2.6%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 재원별 증감 현황을 보면, 구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은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조치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18.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6.4%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4.9%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과 보건의료사업의 확대로 25.5% 증가하였고 주요 세입재원인 보통교부금이 27.7% 증가 하였으며 세 부담 상한선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27억 9,700만원이 새로 교부되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7.4%이며

구민 1인당 지방세인 구세 부담액은 2십만 2,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대비 9.3%가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25.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이 31.6% 감소 편성되어 관리 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29.5%, 물건비 12.9%, 이전경비

38.3%, 자본지출 17.5%, 내부거래 0.8%, 예비비 1.0%로 되어 있으며, 이를 2006년도 구성비와 대비하여 보면, 인건비는 3.0% 감소, 물건비는 0.1% 감소, 이전경비는 2.8% 증가, 자본지출은 1.6% 증가, 내부거래는 0.1% 감소, 예비비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전경비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분야에 대한국·시비 보조사업비 증액분 등이 반영되어 구성비가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각종 투자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및 소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월정수당의 인상분과 구의회 환경개선비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일반운 영비와 의정활동비가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5.3% 증액된 31억 4,64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경비 보조, 동 청사 시설비, 구청사 시설개선, 광대역 자가망 구축 등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정보화 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되었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출산장려 지원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나 지방선거관 련 경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5.1% 소폭 증액되어 1,002억 3,9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대림·양 평문화도서관 건립, 구민회관 리모델링, 문래근린공원 정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아동급식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부문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4% 증가한 1,256억 1,4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149쪽의 인적자원 개발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인 '조직과 개인의 직무 역량 분석'용역 8천만원은 책임연구원이 3명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회 계 예규에 의하면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결론에 대한 책임과 관계된 1인을 원 칙으로 하고 있어 인력조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193쪽의 구청사 관련 '시설비'는 20억을 상회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4쪽 '신문 구독료' 와

235쪽 '반상회보 제작비'는 사업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7쪽의 '방범 CCTV 설치'는 앞으로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효과와 운영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258쪽의 '초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비' 4억은 공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과목 '시설비'를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변경 포괄비에 편성하여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당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행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8쪽의 통합창구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당산제2동과 대림제3동에서 시범 시행중이므로 통합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의 숙지, 용지 교환의 번거로움, 개별 프로그램의 통합 등에 대한 검토, 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3쪽의 '무료프로그램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제3항에 의거 주민자치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은 국민 기초생활수 급자,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 정 등이 전액면제 대상이므로 각 프로그램 이용자 중 이들 면제 대상이 수강 하는 비율은 일부일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대상자가 수강 신청하면 개별적으 로 면제조치하면 되므로 '유료프로그램 강사료'와 '무료프로그램 강사료' 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이 필요하고

또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월 13,000원 내지 30,000원의 수강료를 프로그램 이용자에게서 징수하여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바 수강료 사용 집행 기준의 엄격 적용, 운영비의 투명 운영과 공개그리고 사후평가 절차 등이 요구되며

265쪽의 주민자치센터의 런닝머신, 싸이클, 헬스장 매트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20만원은 징수된 수강료에서 구입을 검토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조례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72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서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의무적립액인 4억 7,358만원의 50%인 2억 3,679 만원을 편성하여 재난대책 등과 관련한 법령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기금액을 부족 편성하여 재난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07쪽 지역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과 '광대역 자가망 구축'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56쪽의 '영등포구상공회 지원'은 2006년 2백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

었으나 단체의 성격과 이들 지원 받는 단체의 업무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16쪽의 민간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3,000만원은 아동 1인당 1만원씩 3천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전체 검진대상자의 현황에 비해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 보육시설별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검진대책이 필요하고

407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17쪽의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및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요즈음 방역문제는 전국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현재 동자율방역단은 분무살균 보다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방역하여 효과가의문시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사업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432쪽 혈액분석장치인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각종 생화학 검사 장비로 1억 4,500만원의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수요량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88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산출기초 조정이 필요하며

573쪽 '공중화장실 편의용품'구입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과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590쪽 '권역별 대기실 및 환적장 세탁기 구입비'는 세탁기 구입 가격인 산출기초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616쪽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은' 노임단가의 산출기초를 재검토 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06년도보다 69.2%인 1억 468만 8천원이 증가된 2억 5,590만 1천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5.2% 인 8,623만 7천원이 증가된 17억 4,669만 9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2006년도 대비 4.2%인 17억 471만 2천원이 증가되어 418억 3,3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을 살펴보면

우리구 소관 12개 기금은 주로 적립성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에 신설된 우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는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함에 따라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여유자금 129억 951만 2천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 5쪽의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의하면 기금의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기초생활보장 기금 외 6개 기금은 기금의 잔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기금 운용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각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여유자금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액의 운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보유 기금을 모두 융자 등으로 지출토록 계획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이 "제로"가 되는 것도 기금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 31쪽의 '기금운용심의위원 운영수당'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제7조에 위원회는 구청 직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수당 편성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재난관련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301-02 '재해보상금'은 302-02로 수정하여야 하나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선지급금)'은 조례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재난 피해시설 복구 지원'은 '재난피해시설 복구'로 수정하여 401-01 '시설비' 비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청사 외벽 수선,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반상회 회보 전 세대 배부를 위한 조정,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을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고 방역활동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 보수공사,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경로행사, 동민체육대회 행사, 도시재정비 대상지 기본조사 용역비 등을 증 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13건에 3억 7,407만 5천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44건에 28억 3,282만 1천원으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2007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최대 억제하고 구정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 중 행사성 경비와 자치단체이전 및 민간이전 예산 등은 지원기준 및 산출기초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2. 12

보고자 : 김 완 섭

따로붙임 1. 각 위원회별 계수 조정 현황 1부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 1부. 끝.